



청 도 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 요청 추가 자료 제출

1. 청도군 주민복지과 - 28671(2019.9.27.)호,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보장제도 신설(아동복지시설 이용·보호 아동 건강검진비 지원)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협의 요청 추가 자료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1.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 1부.
 2. 협의요청 추가자료 1부.
 3. 검사 종목 및 비용관련 서류 등 각1부. 끝.

청 도 군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사회보장조정과장), 경상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

주무관

권대진

드림스타트담

당

류영하

주민복지과장

전결 2019. 11. 28.

홍우진

협조자

시행 주민복지과-34615

(2019. 11. 28.)

접수

우 38330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 <http://www.cheongdo.go.kr>

전화번호 054-370-2161

팩스번호 054-372-8083

/ kdjin7289@korea.kr

/ 비공개(5)

"밝은 미래, 역동적인 민생청도"

서식 1]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

[신설]아동복지시설 이용 · 보호아동 건강검진비 지원

1. 제도(사업) 현황 체크리스트 ※해당되는 항목에 ☒ 표기

구 분		주요 내용	
작성자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성명 권대진 연락처: 054-370-2161	
신설/변경여부		☒ 신설 ☐ 변경 (변경이력 : ____회)	
근거		☒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 자치법규 ☐ 시책 ☐ 기타	
사업 유형	목적별	☐ 보호돌봄 ☐ 요양돌봄 ☐ 교육 ☒ 건강의료 ☐ 생활지원 ☐ 고용 ☐ 주거 ☐ 문화여가 ☐ 생계 ☐ 재해보상 ☐ 기타()	
	대상자별	☒ 아동청소년 ☐ 고령자노인 ☐ 장애인 ☐ 보훈대상자 ☐ 여성가족 ☐ 다문화외국인 ☐ 저소득 ☐ 산재근로자 ☐ 농어업인 ☐ 기타()	
	예산기준별	☐ 복지(080) (세부항목/코드:) (예:보훈 087) ☒ 보건(090) (세부항목/코드:) (예:건강보험 092) ☐ 기타 (세부항목/코드:)	
급여	기준	☒ 자격 ☐ 소득 ☐ 재산 ☐ 자산 ☐ 인적(연령/성별 포함)	
	유형	☒ 현금 ☐ 현물 ☐ 바우처 ☐ 서비스 ☐ 기타()	
	주기	☐ 일주일 ☐ 월간 ☐ 분기 ☐ 반기 ☐ 수시 ☒ 연간 ☐ 일회성	
	횟수	총1회	
전달 체계	신청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 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신청없음 ☐ 기타()	
	조사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 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결정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 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지급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 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사후관리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 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복지 재원	주 소요재원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기금 ☐ 민간 ☐ 기타()	비율100%
	부 소요재원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기금 ☐ 민간 ☐ 기타()	비율__%
지원규모		총100명/가구/개소/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여부		☒ 활용 ☒ 정보연계 ☒ 자격확인 ☐ 신청 ☐ 신청조사 ☐ 전산처리 ☐ 기타() ☐ 비활용	

2. 제도(사업)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시행예정일/협의요청일		2020년 3월(예정) / 2019년 9월
제도 신설 필요성		복지시설 이용(보호)아동에 대한 건강검진으로 전염성 질환의 조기 차단과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필요성 있으나 경제적 문제로 검진이 미 실시 되는 현실을 감안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관련규정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 2019 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 안내(지침)
사업목적		전염성 질환의 조기발견으로 시설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지원 및 의료비 부담 경감
성과지표		건강검사 실시율(건강검사 아동수/전체 대상아동수)
지원 대상	선정기준	검진일 기준 아동복지시설 이용·보호 아동
	대상규모	청도 관내 약 100명
지원 내용	지원유형	검진 실시 List 제출 후 사후 지원
	지원수준	1인 25,000원 한도 내 지원 (연 1회)
전달 체계	지원절차	신청 안내→검진실시→검진결과서 제출→심사→교부
	수행기관	청도군청
소요 재원	총규모	총 재원규모 : 250만원 (25,000원 X 100명)
	재원별 규모	군비 100%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	필요 정보	복지시설 입퇴소 현황조회 및 이용시설 이용자 현황
	연계 방안	행복e음으로 조회 가능

3. 사업의 타당성

① 제도(사업) 신설의 필요성 및 목적

-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제3장 등에서는 아동의 건강한 심신의 보존과 건강관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취약계층 아동은 경제적 문제로 건강 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의 지원으로 건강 검진의 기회를 제공코자 함.
- 복지시설의 단체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전염성 질환의 조기 발견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의 관점에서도 주기적, 의무적 건강 검진의 필요성 증가.
- 시설보호·이용 아동들은 취약계층이 대부분으로 선별적 복지의 관점에서 우선적 검진 시행이 필요함.
- 질병과 전염성 질환의 조기발견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보호자의 의료비 경감으로 함께하는 복지 사회 구현.

② 지역의 특수성

- 도 자체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에 검진비 지원 사업이 있으나, 관내 아동양육시설은 개인 운영시설로 운영비 지원 제외대상으로 전염성 질환을 포함한 건강 검진 비용 부담에 애로 있음
- 지역아동센터 입소 및 보호 아동도 연 1회 건강 검진을 하여야 하나, 경제적 원인을 이유로 검진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강함.
- 관내 보건소는 전염병 예방, 보건위생 지도, 아동의 영양개선 등 역할은 충실하나, 검진을 실시할 여건은 되지 않아 일반 병원에서 검진을 해야 하는 실정임.
- 관내 아동복지시설 정원 100명 이내로 적은 예산으로 효율은 극대화 가능함.

4. 기존 제도와와의 관계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 서비스 등 관련제도 분석

구 분	대 상	지 원	예 산	비 고
아동양육시설사업비 지원사업(건강검진비)	양육시설 입소아동	25,000원(1인)	('19년) 18,800천원	개인운영시설 지원제외(청도제외)
그룹홈아동사업비지원 사업(건강검진비)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25,000원(1인)	('19년) 2,375천원	

- 관내 아동 양육시설이 2개소 있으나 개인 운영 신고시설로 건강검진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은 없는 실정임.

②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 일반 아동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이용·보호 아동 중 경제적 문제로 건강 검진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 대한 선별적 지원 원칙.
- 대상 아동의 집단이 소규모로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진단 실시 시설에서 전염성 질환의 발병 횟수 등으로 효과와 성과지표의 계량화가 용이함.

5.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 수준의 적정성 등

● 지원대상

- 검진일 현재 청도군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이용·보호 아동.

● 지원내용 및 방법

- 검진 결과 List 제출 시(병원) 검진 병원에 비용 지급 (1인 25,000원 내 실비지원 예정)
- 건강진단 항목 및 방법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준용
- 타법 · 타사업에 의한 검진실시 시 타법 우선 적용하여 중복지원 금지

6.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①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아동복지시설 이용·보호 아동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군 자체 사업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전혀 없으며 청도군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면 재정부담은 크지 않음
- 본 사업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도내 다른 제도의 '예산변경사항 없음'
- 타 사회보장 제도의 시행과 국고사업 지방비 매칭 등에 '부정적 영향 없음'

② 지방자치단체 통계자료

- 전년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및 전체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보장예산(비율), 자체사업 비중 등에 대한 통계자료 * 지방(교육)재정공시 참고

(단위: %, 억원)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예산(b)	사회복지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 /b*100)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매 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 비 100% 사업
16.33	66.01	3,293	642	19.51	20.3

③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 신청 안내→검진 실시→교부신청→심사→교부결정(현금지원) 절차 일체를 군에서 원스톱 진행 가능하며, 전달체계의 신설·추가·변경이 불필요하여 과부하 등이 비효율 발생이 없음

④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소요예산(천원)	1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지원인원(명)	500	100	100	100	100	100

● 제정의 지속가능성 : 100% 청도군 자체 예산으로 조달

● 정책의 지속가능성 : 상기 사업은 청도군 100대 과제 선정 사업이며, 전액 군비 부담사업으로 향후로도 지속 가능한 사업임

7. 참고자료

● 아동복지법 제35조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019 지역아동센터지원 사업안내

발 간 통 록 번 호

11-1352000-001412-10

2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 WELFARE

0

1

9



보건복지부

5 시설 건강·급식·위생관리

가.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1) 아동의 입소 시에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함

- 검진기관 :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 시군구청에서는 원활한 아동 건강진단을 위하여 지역보건소와의 연계협력 방안 마련 권고

※ 건강진단 항목 및 방법(「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 일부준용)

항목		방법(세무항목)
1. 근골격 및 척추		근골격 및 척추의 형태 및 질병 검사
2. 눈	시력측정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을 검사
	안질환	결막염, 눈썹찢림증, 사시 등 검사
3. 귀	청력	청력계 등에 의한 검사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
	귓병	중이염, 외이도염 등 검사
4. 콧병		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5. 목병		면도선비대, 경부림프절종대 및 갑상선비대 등 검사
6. 피부병		아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염 등 검사
7. 기관능력		호흡기(알레르기성 천식포함), 순환기, 비뇨기, 소화기 및 신경계통 검사
8. 기타		기타 추가로 검진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초등학교 1~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생) 결과 통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검진(9세이상 24세이하 학교 밖 청소년) 결과 통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로 갈음(결과서는 보호자에게 요청)

※ 당해연도 학생건강검진이나 영유아건강검진 시기 등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먼저 입소 조치 후 검진기간 내 검진을 받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안내 필요

※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보호자가 별도로 실시하거나 기타 방법(보건소 연계 등)으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보호자 등에게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함

- 다만, 보호자의 질병·부상·부재 등 보호자의 조치를 요구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 시설 운영비(프로그램비)에서 이용아동의 건강검진 비용 지출 가능

2) 보호아동 및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하여야 함

※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른 비사무직 종사자로,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일반건강 검진으로 같음되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 실시(사업주 부담 없음)

3)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4) 시설의 장은 이용아동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

5) 아동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비치

6) 시설의 장은 이용아동 또는 종사자에게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 발견시 즉시 시·군·구청 담당부서 및 관할 보건소에 신고

2019년도 신설사업으로 협의완료한 사업 목록

시도명	시군구명	제도(사업명)	문서번호
경북	청도군	아동복지시설 이용·보호아동 건강검진비 지원	주민복지과-28671 (2019.9.27) 주민복지과-34274 (2019.11.22) 주민복지과-34615 (2019.11.27)